

# 국제문화원 규정



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07.5.1		16		
2	2007.9.1		17		
3	2011.3.10		18		
4	2012.12.21		19		
5	2016.8.1		20		
6	2018.6.15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# 국제문화원 규정

### 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명칭) 본 원은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부속 국제문화원[Institute for International Culture & Education]이라 한다.<개정 2012.12.21.,2018.6.15>

제2조 (구성) ① 국제문화원은 한국어교육부, 국제교류부로 구성되며, 산하에 사회교육원과 항공우주박물관을 둔다. 또한 국제문화원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.

<개정 2007.9.1., 2011.3.10, 2016.8.1.,2018.6.15>

②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교육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3.10.]

③ 항공우주박물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  
<신설 2018.6.15>

제3조 (위치) 국제문화원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캠퍼스에 둔다. <개정 2012.12.21>

제4조 (목적) 국제문화원은 외국인의 한국어교육 담당 및 본교 국제교류 업무의 수행, 지역 시민에게 평생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항공우주박물관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,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07.9.1., 2011.3.10.,2018.6.15>

1. 삭제 <2007.9.1>

2. 한국어교육부: 본교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, 외국인 및 해외 동포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고 한국문화와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한다.

3. 국제교류부: 본교 재학생의 외국 유학 및 자매학교를 비롯한 외국대학으로부터의 본교 유학에 관한 국제 교류 업무를 담당한다.

4. 사회교육원 : 평생교육법에 의거 대학의 우수한 인적·물적 자원으로 지역 시민에게 평생을 통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열린 교육사회, 평생학습기회를 구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.<신설 2018.6.15>

5. 항공우주박물관 : 본교 항공우주박물관은 국내·외의 항공우주에 관한 제반 자료를 수집, 정리, 전시함은 물론 본교 재학생 및 일반인의 항공분야 이해를 돕는 교육과 학습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<신설 2018.6.15>

제5조 (사업 및 기능) ① 삭제 <2007.9.1>

② 한국어교육부는 제4조 제2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<개정 2007.9.1>

1. 외국인 학생 및 해외교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 수행

2.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추진

3. 한국어 연구 및 언어교육과 관련한 학술행사

4. 기타 위의 각 호에 부합하는 사항
- ③ 국제교류부는 제4조 제3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<개정 2011.3.10>
  1. 외국인 유학생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
  2. 해외파견학생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
  3. 외국인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
  4. 기타 위의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- ④ 사회교육원은 제4조 제4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<신설 2018.6.15>
  1. 사회교육과정
  2. 일반교양과정
  3. 전문교육과정
  4. 학점은행제 학위과정
  5. 기타 위의 각 호에 부합되는 사항
- ⑤ 항공우주박물관은 제4조 제5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<신설 2018.6.15>
  1. 국내·외 항공분야 자료수집 및 전시
  2. 한국항공대학교 대·내외 홍보활동
  3. 항공특성화 교육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
  4. 기타 위의 각 호에 부합되는 사항

제6조 (원장 및 교직원) ① 국제문화원에는 원장을 두며,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원장은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07. 9.1, 2011.3.10., 2018.6.15>

- ② 국제문화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<삭제 2018.6.15>
- ④ <삭제 2018.6.15>
- ⑤ 원장은 국제문화원 및 산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요원을 기간제로 임명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신설 2018.6.15>

제7조 (운영위원회) ① 국제문화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인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1. 국제문화원 및 산하기구의 사업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
  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3. 교육과정 및 교과에 관한 사항
  4. 수강인원, 수강료, 강사료, 강의 개설에 관한 사항
  5.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 6. 프로그램에 운영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
  7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-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<전부개정 2018.6.15>

제8조 (교육과정 운영 등) 국제문화원 및 산하기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 및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.<전부개정 2018.6.15>

1. 삭제 <2007.9.1>

2. 삭제 <2012.12.21>

3. 삭제 <2012.12.21>

제9조 (입교 및 수료) 국제문화원의 입교는 과정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으며,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이수증서를 교부한다.

② 삭제 <2012.12.21>

제10조 (포상 및 장학) ① 수강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.

② 본원의 수강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본원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본원의 일반 수강생 또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에 한한다. 단, 본 대학에 재적하는 자는 본 대학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

<신설 2018.6.15>

제11조 (징계) ① 수강생이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.

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, 정학, 제적으로 구분한다. 단,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칙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. <개정 2012.12.21>

## 제 2 장 사회교육원 삭제<2007.9.1>

제12조 삭제<2007.9.1>

제13조 삭제<2007.9.1>

제14조 삭제<2007.9.1>

제15조 삭제<2007.9.1>

제16조 삭제<2007.9.1>

제17조 삭제<2007.9.1>

## 제 3 장 한국어교육원 삭제<2007.9.1>

제18조 삭제<2007.9.1>

제19조 삭제<2007.9.1>

제20조 삭제<2007.9.1>

제21조 삭제<2007.9.1>

## 제 4 장 회 계

제22조 (운영예산) 국제문화원의 운영은 수강생의 입학금 및 수강료, 국고지원 보조금, 위

탁헌련 지원금, 교비예산 등으로 한다.<개정 2012.12.21>

제23조 (회계 및 회계연도) 국제문화원의 회계는 교비회계에 편입하여 처리하며, 그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<전부개정 2018.6.15>

- ① 삭제
- ② 삭제

## 제 5 장 기 타

제24조 (운영세칙 및 내규) 삭제 <2018.6.15>

제25조 (준용) 본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로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 사회교육원과 한국어교육원에서 담당하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내용은 본 규정에 의한다.
3. (폐지규정) 이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「사회교육원 규정」, 「한국어교육원 규정」은 폐지한다.
4. (시행일)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0일부로 시행하되, 201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6. (시행일)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21일부로 시행한다.
7. (시행일)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8. (시행일)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